

의안번호	2205700
의 퇴 인	정성호의원
회 답 일	2024.1.6.
추 계 번호	24D5205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, 특전예비군을 확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~2030년까지 1억 5,290만원(연평균 3,06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특전예비군 확대	9.5	19.4	29.7	40.4	53.8	152.9	30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 제2항 (예비군의 편성 및 해제 등) 신설	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음. 이 경우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전예비군에 우선 편성되도록 함(제2항)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14조의3 제2항 및 제3항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신설	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특전예비군을 우선적으로 육성·지원하여야 함(제2항) 제2항에 따른 특전예비군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2 제2항 (예비군의 편성 및 해제 등) 신설	○	-
2	안 제14조의3 제2항 및 제3항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, 특전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경우, 특전예비군 훈련 확대에 추가재정소요 발생
- 개정안은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법개정에 따른 특전예비군의 규모 및 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특전예비군으로 편성 여부¹⁾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, 특전예비군대원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
- 추계에서는 특전예비군 규모가 2014년 1,2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 기준 574명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, 1,200명까지 확대할 경우를 가정함
- 특전예비군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소요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⁾을 적용하여 산

1) 동원훈련소집대상 예비군이 특전예비군으로 편성될 경우, 동원훈련소집대상 예비군의 감소에 따라 동원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정함

- 특전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후 특전예비군 훈련내용과 방법의 변화에 따른 1인당 훈련비용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~2030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특전예비군 편성(안 제3조의2)

(1) 지원단가

- 개정안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, 특전예비군의 훈련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경우,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2024년 기준 특전예비군은 574명이며, 특전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4,37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, 1인당 76,195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
[표 2] 특전예비군 인력 및 예산 현황: 2020~2024년

	2020	2021	2022	2023	2024
인원수(명)	617	613	598	586	574
예산(천원)	30,427	30,718	31,088	41,366	43,736
1인당 예산(원)	49,314	50,111	51,987	70,590	76,195

자료: 국방부

- 2024년 특전예비군 1인당 훈련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1인당 훈련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1%	2.0%	2.0%	2.0%	2.0%	2.0%

[표 3] 특전예비군 1인당 훈련단가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특전예비군 1인당 훈련단가	79,351	80,938	82,557	84,208	85,89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(2) 지원대상

- 추계에서는 2024년 특전예비군 수 574명에서 2030년 특전예비군 수를 1,2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매년 12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4] 특전예비군 수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특전예비군 수	694	814	934	1,054	1,200
신규 증가인원	120	120	120	120	146
누적 증가인원	120	240	360	480	62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, 특전예비군을 확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억 5,290만원(연평균 3,06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특전예비군 확대	9.5	19.4	29.7	40.4	53.8	152.9	30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특전예비군 규모를 2030년까지 1,20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훈련비용은 2024년 훈련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

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로, 향후 특전예비군 규모, 훈련내용 및 방법의 변화에 따른 1인당 훈련비용의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